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 인 번 호	회 의 차 수	회 의 일 자	제 의 자
제 50 호	제 28 차	1988.12./	총재 김 건

의 인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의취지 해외부문의 대규모 유동성 살조에 대처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조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공급능력을 축소하여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금
증별로 차등지준율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저축성예금의 증가를 유도하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57조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위원회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생 략

한국은행법 제62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할 때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할 때에는 늦어도 2주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 (생 략)</p> <p>제2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56 459 525 573"> <thead> <tr> <th>예금종별</th> <th>지급준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저축성예금</td> <td>7.0%</td> </tr> <tr> <td>요구불예금</td> <td>7.0%</td> </tr> </tbody> </table> <p>②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은 제1항의율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부금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예금지급준비 최저율을 2% 한다.</p> <p>④ 상호부금은 예금지급준비액에대상 예금채무에서 제외한다.</p> <p>제3조 (예금의 분류) ① 제2조에 의한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으로 하며 기타 예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분류한다.</p> <p>② 주택부금과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저축성예금으로 분류한다.</p>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예금	7.0%	요구불예금	7.0%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627 453 987 705"> <thead> <tr> <th>예금종별</th> <th>지급준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부금</td> <td>3.0%</td> </tr> <tr> <td>2년이상단기 정기예금, 2년이상단기 정기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td> <td>7.0%</td> </tr> <tr> <td>기 타 예 금</td> <td>10.0%</td> </tr> </tbody> </table> <p>(삭 제)</p> <p>(삭 제)</p> <p>② 상호부금 및 압도성예금증서발행채무는 예금지급준비액에대상 예금채무에서 제외한다.</p> <p>(삭 제)</p>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부금	3.0%	2년이상단기 정기예금, 2년이상단기 정기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	7.0%	기 타 예 금	10.0%	<p>- 지급준비율 인상 및 예금종별 지준율 차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부금, 제형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지준율 인상 : 2% → 3% ○ 2년이상 정기에 적금 지준율 : 7% ○ 기타 저축성예금 및 요구불예금 지준율 인상 : 7% → 10% <p>-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등지준 적용배제</p> <p>- 제2조 제1항으로 이관</p> <p>- CD 규정에 규정화되어 있는 지준예치의무 면제조항을 본 규정에 이관</p> <p>- 예금종별 지준율 차등화에 따른 예금 구분을 제2조 제1항에 규정</p>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예금	7.0%															
요구불예금	7.0%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부금	3.0%															
2년이상단기 정기예금, 2년이상단기 정기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	7.0%															
기 타 예 금	10.0%															

현행	개정 (안)	비고
<p>제4조-제6조 (생 략)</p> <p>(신 설)</p>	<p>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이 규정은 1988. 12. 23(12월 하반기 요지준 적당시)부터 시행한다.</p>	<p>- 조 정비</p>